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04호 2023. 3. 22.(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38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521호 보 상 계 획 공 고 3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호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7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엄대2길 16-8 등 8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1길 5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읍 김천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김천리 상아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3. 3.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김천리 상아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일원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0.0m, B=8.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 선정)

5. 보상절차

가)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제출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별첨 1】 토지조서(사업시행에 따른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17필지			9,378	2,187		8명			
1	거창읍 김천리	207	전	전	462	14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809호 (상림리사랑채아파트)	박재선			
2	~	213-8	임	임	562	56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2,2층	정민개발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37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3	~	산8-35	임	임	1,124	50	경남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39-30	이윤기 (지분 1/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거창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1길 32-2, 501호(휴먼빌)	김혜연 (지분 1/2)			
4	~	213-7	임	임	1,760	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2,2층	정민개발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37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	~	696	대	대	696	33	-	-			
6	~	207-3	대	대	516	31	-	-			
7	~	213-17	전	전	99	9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2,2층	정민개발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37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8	~	213-3	대	대	2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42번길 11, 202호 (재송동, 남광아파트)	박종선			
9	~	213-11	임	임	370	3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2,2층	정민개발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37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0	~	213-19	전	전	156	9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2,2층	정민개발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2길 37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11	~	213-12	임	임	857	8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로 28,106동 203호(대동이미지아파트)	신용성			
12	~	213-5	전	전	257	1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6-7	최순탁			
13	~	213-4	대	대	157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0(수내동)	하나님의 교회			
14	~	213-9	대	대	333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46-7	최순탁			
15	~	213-6	전	전	172	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7-1	최순탁			
16	~	213-2	전	전	1,331	3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0(수내동)	하나님의 교회			
17	~	213-15	임	임	524	3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0(수내동)	하나님의 교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거창군청에서 시행하는 『김천리 상아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추천 감정평가업자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

연번	성 명	주 소	면적(㎡)	날인(서명)
1				
2				
3				
4				
5				
6				
7				

2023. . .

거창군수 귀하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3년도 제1회 거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고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다급)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안전관리자 (시간선택 제임기제 다급)	<p><필수요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p>* 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p> <p><경력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경력</p>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진정 사건 등 대응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임용 기간 및 근무시간

구분	인원	분야	직급	임용기간	근무시간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2년	주당 35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56,679	40,260	주 35시간

※ 보수월액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3. 3. 27 ~ 3. 29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023.3.30.(목)	2023.4.6.(목) 거창군청	2023.4.7.(금)

-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 7,000원
 -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필요시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전형결과 적임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2.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